

##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 특수 관계인의 친족범위 축소 등 주요 골자

특수 관계인의 친족 범위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3월 25일 공포·시행)의 후속조치로, 출종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이외의 주요 내용으로는 △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특수 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변경(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을 유지)한 특수 관계인의 친족범위 축소 △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분할·영업양도 등의 당사회사인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새로 도입되는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 주체, 내용, 시기 등의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기업집단공시제도 관련 하위규정 마련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위반 및 기업결합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시행령 별표 3·4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고 과태료 금액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되지만, 기업집단공시제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관련 부분과 함께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벌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되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됐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부과한 후, 이들 점수의 합계(T)를 기초로 과징금 부과율을 결정하고 있다.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에 대해 40점의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를 부과한다. 또한 벌점 부과기준에서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은 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묶어 같은 위반유형에 속하는 여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가장 중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행위의 성격을 감안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 행위를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등과 함께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로 분류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채증감현황 및 세부내역 분석·발표

### 대기업집단, 현금성 자산 크게 늘고 환율상승 따른 외화부채 평가액 대폭 증가

2009년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08.12.31. 기준, 비금융사 대상)은 119.9%로 2008년 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 98.4% 대비 21.5%p 증가했다.

40개 민간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12.4%로 전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인 119.9%보다 7.5%p 낮으나, 전년도 92.1% 대비 20.3%p가 증가했다. 8개 공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45.6%로 전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보다 25.7%p 높고, 전년도 118.0%보다 27.6%p 증가했다.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을 상위 5대, 6~10위, 11~20위, 21~30위, 31~40위, 41~48위 기업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위 5대 그룹의 부채비율이 82.8%로 가장 낮고, 11~20위 그룹의 부채비율이 20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총액('08.12.31. 기준, 비금융사 대상)은 691.9조 원으로 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총액 501.5조 원보다 190.4조 원으로 38% 증가했다. 차입금·사채 335.7조 원, 매입채무 79.1조 원, 선수금·선수수익 72.8조 원, 미지급금·미지급비용 63.6조 원, 파생상품부채 41.1조 원 등 592.3조 원으로 부채의 8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부채의 세부항목별 증감 내역을 보면, 주로 차입금·사채, 파생상품부채, 선수금·선수수익 등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 증가는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및 신용경색 우려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48개 기업집단의 2008년 12월 31일 기준 현금성 자산은 약 61.8조 원으로 전년 동기 기준 48.0조 원보다 28.8% 증가한 13.8조 원이었다. 또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외화부채의 원화환산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2008년 12월 31일 기준 주요 외화표시 부채(매입채무, 차입금·사채 등, 미지급금, 미지급비용)는 약 132.4조 원인데, 이 금액을 2007년 12월 31일 기준 환율로 환산 시는 약 96.7조 원이다.

아울러 2008년 기간 중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외환관련 영업외손실과 이익 각각을 증가시켰으나 이익 보다는 손실 쪽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쳐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는데,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영업외부문에서의 외환관련 손실은 약 78.2조 원으로 전년(7.7조원) 대비 70.5조 원(915.6%) 증가한 반면, 외환관련 이익은 약 59.3조 원으로 전년(6.3조 원) 대비 53조 원(841.26%) 증가하여 손실 증가가 이익 증가보다 컸다.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외환관련 손실은 이들 집단의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고, 당기순이익 감소는 자본총액을 감소시켜, 부채비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 ▣ 2008년 기업결합 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30일 '2008년 기업결합 동향'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결합 건수는 지금까지의 추세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857건을 심사한 것과 비교해 2008년에는 35.8%가 감소된 550건이었다.

동일 기준 즉, 2007년 11월 및 2008년 7월에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상향조정되어 2007년 기업결합 심사건 중 2008년 신고기준을 충족하는 건으로 기준을 적용하면 2007년 493건에서 2008년 550건으로 11.6%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9년 1/4분기는 7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54건에서 크게 감소했다.

기업결합 금액 역시 2007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2008년도의 총 결합금액이 142.8조 원으로 2009년 297조 원보다 51.9%나 감소했다.

국내 기업과 관련해서는 21.5조 원으로 36.5% 감소했으며 외국 기업간 결합에서도 121.2조 원으로 53.9% 감소했는데, 평균 결합금액은 2007년 4,171억 원에서 2008년 3,037억 원으로 27.1% 감소했다.

정보통신·방송업은 35건에서 52건, 유통부문은 10건에서 15건 등에서 활발한 기업결합이 성사된 반면, 기계 장비 제조업은 22건에서 12건, 전자부품·영상장비제조업은 32건에서 26건 등으로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기업결합에서는 특히, 수직결합 형태의 기업결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결합은 135건('07년) → 148건('08년)로 9.6% 증가했고, 혼합결합은 328건('07년) → 345건('08년) 5.2% 증가했지만, 수직결합은 30건('07년) → 57건('08년)으로 90%나 증가한 것.

아울러 현대자동차(신흥증권), 롯데(대화화재), 한화(제일화재), 현대중공업(CJ투자증권), 두산(BNG증권 중개) 등 대기업들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업 진출과 확장이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외국기업들의 국내 기업 인수도 상당 부분 감소했는데, 인수 건수가 2007년 56건에서 2008년 47건으로 16.1% 감소했으며, 총 결합금액 역시 1.6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12.5%가 감소했다.

## ▣ 에스램반도체 국제카르텔에 무혐의 결정

### 법 위반 증거 없고 미국·EU 등에서도 조치한 사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0일 전 세계 주요 에스램(SRAM)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억장치의 일종으로 휴대전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에스램(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의 세계시장규모는, 휴대폰 수요 팽창으로 2000년에 74억 달러에 이르렀다가 급격히 축소되어 2002년에는 29억불로 대폭 축소됐다. 국내 에스램시장도 2000년 1.8억 달러에서 2002년 1억 달러, 다시 2004년에는 5천만 달러로 시장규모가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주요 국가 경쟁당국에서도 디램반도체 조사에 이어 에스램반도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한국 2개, 미국 2개, 일본 6개 등 10개 에스램 제조업체로, 중점조사내용은 법 위반혐의가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가격담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국내시장도 대상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이들의 행위가 국내시장에도 가격 및 생산량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었다.

조사 관할권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를 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램 제조업체들 간에 국내시장이나 국내고객을 대상으로 생산량, 거래조건을 제한하기 위한 담합을 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전 세계시장 또는 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에스램 제조업체들의 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국내업체들 간에 에스램 가격과 생산량 제한 담합을 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에 대해 무혐의 조치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주요국가의 에스램반도체 사건은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그동안 각국의 조사결과에서도 법 위반혐의를 인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국가에서는 조사를 종결하고 그 사실을 피조사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편, 디램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미 조치를 취했고 EU 등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스램은 미국과 EU 등이 조사했으나 제재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래시메모리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 기업부담 줄이고 제도 실효성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8일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4월 23일부터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은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시행되던 것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시로 상향한 것으로, 형식은 제정이지만 실질은 개정에 가깝다고 소개했다. 새로운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태료 감면 사유를 신설해 전반적인 과태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법정 기간 내에 동 결합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전에 신고경험이 없는 기업이나 소규모기업,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순한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담을 적극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울러 새 기준은 종전의 복잡하고 모호했던 과태료 산정절차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개편해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결합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과태료 산출의 기본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즉, 신고회사의 규모를 각 '2천억 미만, 2천억~2조 원, 2조원 이상' 기준으로 3단계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결합 상대회사 역시 같은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총 9단계)해 당사회사 중 한쪽의 규모가 작은 경우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다양한 임의적 감경사유를 신설하고 감경 폭을 구체화했다. △ 감경사유 및 감경률은 간이신고나 간이 심사대상인 경우 20% 이내 △ 주식을 직접 양수하는 방법 이외의 사유로 기업결합 신고의무 발생시 20% 이내(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30% 이내 △ 과거 신고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20% 이내로 조정한 것.

이울러 최종 부과과태료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금액 산출 순서에 따라 기본금액, 기준금액, 임의적 조정금액, 부과과태료를 순차로 규정하여 복잡한 과태료 산정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산출과정을 간단 명료화했다.

반면, 최근 5년 간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으로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회 위반 시부터 1회 당 20%씩 추가 가중하도록 해, 과거 범위만 경력에 따른 가중 적용을 실질화해 반복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도록 했다.

##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발표

### 평가 대상 8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효과는 총 4,713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4/4분기 중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8개 대기업의 1년간 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해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 각각 A+와 A등급을, GS건설과 현대건설에 B등급을, 나머지 4개 건설사에 C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평가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부문은 대부분 양호했으며, 납품단가 조정,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개사 모두 3대 가이드라인을 사규 및 계약서에 반영했고 대부분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했으며, 6개사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롯데건설(98%)과 두산건설(97%) 2개사도 95% 이상의 현금성결제비율을 유지했다.

중소 협력사에 대한 납품대금 인상실적은 568개사에 총 1,684억 원이었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각각 2,787억 원, 77억 원의 자금을 협력사에 지원했지만, 건설사들의 경우는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협력사 기술보호 등과 관련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또한, 건설경기의 침체로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가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이 없었으며,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은 3대 가이드라인 중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의 운용실적이 없었다.

그리고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은 특허출원 지원 등과 같은 협력사 기술보호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

이번 평가대상 8개사의 협약이행에 따른 협력사 지원효과는 약 4,713억 원으로 평가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자금지원 2,864억 원, 납품대금 인상 1,684억 원, 원자재 일괄구매·공급에 따른 자재비용 절감 90억 원(현대건설), 협력사 자산매입 52억 원(현대건설), 입찰참여 기회제공 23억 원(포스코건설) 등이다.

한편,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평가하는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제도는, 현재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4,764개 협력사와 체결했다.

이번 평가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이 도입된 후 이루어진 두 번째 평가로, 지난번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3사였던 LG전자, KT, 삼성물산(건설부문) 모두 A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 ▣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

### ‘인터넷 메신저 연락 후 행동 통일되면 합의추정’ 등 정황증거 규정 보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 2009년 4월 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일반적인 처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위 예규로 2002년 5월 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어떤 행위가 카르텔에 해당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9가지 카르텔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예시 조항을 신설했다.

9가지 카르텔 유형은 가격담합, 거래조건 담합, 산출량 담합,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설비의 신·증설 제한,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영업의 공동수행 및 이를 위한 회사 설립, 입찰담합, 기타 사업활동 제한 등이다.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비밀회합이나 대면접촉 없이도 전화,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연락 등이 이루어지고 행동 통일이 된 경우 카르텔 합의 추정의 정황증거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가격과 산출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합의 추정의 정황증거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 심사기준에서는 합의 추정의 정황증거가 되는 경우로 가격이나 산출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로 예시했었다.

## ▣ 자산 5조원 이상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 2009년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48개 기업집단 1,137개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기준이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조정된 지난해 7월 1일 현재 41개 기업집단과 대비해 7개가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9개사는 한국석유공사, 오씨아이(구 동양화학), 에스-오일, 웅진, 현대산업개발, 삼성테스코, 세아, 한국투자금융, 케이티앤지다. 그러나 영풍과 이랜드는 지정 제외됐으며, 삼성,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등 39개 기업집단은 작년에 이어 연속 지정됐다.

올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수는 1,137개로 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1개 집단, 946개사)보다 191개사(20.2%) 증가했고, 평균계열사 수는 23.7개로 전년 23.1개보다 0.6개(2.6%)가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 77개, 지에스 64개, 삼성 63개, 씨제이 61개의 순이었으며, 계열회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엘지 16개, 에스케이 13개, 대한전선 12개, 효성 11개 등이다.

자산순위에 있어서는 상위집단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위권 밖의 경우 다소 변동이 있었다. 1위부터 20위까지는 포스코가 9위에서 7위로 상승했고, 에스티엑스가 21위에서 19위로, 대우조선해양이 28위에서 20위로 새롭게 20위권 내에 진입했다. 또한 21위~48위권에서는 한국석유공사 23위, 에스-오일 37위, 한국투자금융 46위가 신규 지정되면서 새롭게 진입했고, 대한전선 32위(이전 36위), 오씨아이 34위(이전 48위), 삼성테스코 44위(이전 51위) 등은 순위가 상승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전체 자산총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8개)의 자산총액은 1,310.6조 원으로 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1개)의 자산총액 1,043.7조 원보다 266.9조 원(25.6%)이 증가했다.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으로 30.4조 원이었으며, 에스케이 13.9조 원, 대한주택공사 13.1조 원, 현대자동차 13조 원, 엘지 11.2조 원의 순이다.

한편, 부채현황 전체 부채총액 및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총액은 691.9조 원으로 작년의 부채총액 501.5조 원보다 190.4조 원(38%)이나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119.9%로 전년(98.4%) 대비 21.5%p가 증가했다.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집단은 15개 기업집단으로 전년 8개보다 7개 집단이 증가했고, 민간 기업집단의 경우는 삼성테스코, 지엠대우, 대우조선해양 등 11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섰다.

공기업집단은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4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해 민간 기업집단보다 공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민간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12.3%로 전체 119.9%보다 7.6%p 낮고, 공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45.6%로 전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119.9%보다 25.7%p가 높았다.



## ▣ ‘공정위 회의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재신고사건의 신중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절차규칙의 개정으로 공정위 처분에 직접 영향을 받는 피심인에게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공정위 사건처리결과의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절차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장의 직권으로만 결정되던 심의속개 여부에 대해 명문화된 심의속개 사유를 규정하고 심사관과 피심인이 심의속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사건에서 피심인이 자기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피심인에게 사전에 송부되지 않았던 심사관 조치의견(과징금 세부산출내역서 포함)을 심사보고서와 함께 송부도록 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영업비밀’ 개념을 준용해 피심인 등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 노출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경쟁사업자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결서 작성에 있어서도 ‘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원본’과 ‘(영업비밀 등의 사항이 삭제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사본’을 구분토록 했다.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 접수일을 기점으로 하여 15일 이내(자료보완기간 제외)에 사건착수보고를 하도록 했으며, 심사관이 신고인의 주장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는 처리결과는 물론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해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사건에 대한 무혐의 등 처리에 대해 재신고 된 사건의 경우는 상임위원 1인 등 3인으로 구성된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서 최초 처리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적용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서식을 마련해 신고(신청인)가 ‘신고’와 ‘분쟁조정신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

### 신규 계열편입회사의 정기공시는 1년 1회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시 규정은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공시규정을 따르게 된 계열회사들이나 연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된 회사는 연도별 정기공시사항을 편입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1회만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 중 신규 계열 편입된 회사는 오는 4월 7일 정기공시의무가 면제되어 해당회사의 공시업무 부담이 완화된다.

개정 전 공시규정은 매년 1~3월 중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신규 편입된 회사는 편입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정기공시사항을 공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7일에 정기공시사항을 다시 한 번 공시하도록 했었다.

또한, 개정된 공시 규정은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공시대상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등 공시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용어를 수정해 공시의무회사가 공시규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했다.

지난 1월 3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정기공시사항 양식을 2개에서 1개로 통합, 2월부터 활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공정위는, 이번에 실시하는 공시규정 개정으로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공시규정도 명확하게 보완·수정되어 공시대상기업들의 공시의무위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년 12월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11개 그룹의 비상장회사 92개사가 15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공정위에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이중 복잡한 공시규정에 따른 사소한 위반사례가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 ☐ 2009년 4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2009년 5월 4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48개 집단 1,145개로 2009년 4월 1일 현재 1,137개에서 편입 14개, 제외 6개로 8개가 증가했다.

증가내역은 △ 회사 설립 8개[삼성 : 삼성엘이디(주), 현대자동차 :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주), 에스케이 : 피에스 앤마켓팅(주), 엘지 : (주)엘지하우시스, 한진 : (주)한진지티앤에스,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 두산 : (주)두산에이엠씨, 현대백화점 : (주)현대비엔피] △ 지분 취득 2개[지에스 : 상락푸드(주), 엘에스 : (주)에프에이에스티] △ 기타 4개[포스코 : (주)엔투비, 지엠대우 : 오토모티브스티어링코리아(유), 한국투자금융 : (주)메이저티, (주)트리에듀케이션그룹]로 총 14개다.

감소 내역은 △ 합병 4개[에스케이 : (주)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 에스티엑스 : (주)포스아이, 신세계 : (주)웨미리푸드, 웅진 : (주)캠퍼스이십일] △ 청산종결 1개[지에스 : (주)동보아이엔티] △ 지분매각 1개[씨제이 : 드림네트웍스(주)]로 총 6개다.

### 〈 2009년 4월 중 계열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 집단	2009. 4. 1.	편 입				제 외							증 감	2009. 5. 4.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 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 타	계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48개)	1,137	8	2	4	14	4	1	1	-	-	-	6	8	1,145

#### ■ 변동 내용

가. 편입 : 14개사(회사 설립 : 8, 지분 취득 : 2, 기타 : 4)

나. 제외 : 6개사(지분 매각 : 1, 흡수합병 : 4, 청산종결 : 1)

####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서면 계약문화 정착 캠페인' 전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구두발주(위탁)로 인한 중소기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구두발주 관행의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경련, 대한 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과 함께 민간합동으로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기 간 : 2009년 5월 1 ~ 6월 30일 (2개월간)

#### ■ 주요 내용

- 상생협력 및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 선포식(5월 21일)
  - 상생협력 평가 우수기업 표창 및 평가 우수사례 발표 및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문 낭독(3개 경제단체 합동)
- 정책고객(4만여 사업자)에게 PCRМ을 통한 홍보
- 서면실태조사 대상 10만개 원·수급사업자에 대한 홍보
- 하도급특별교육 참석 원·수급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4회, 8~9백여 명)
- 공장경영연합회 등 사업자단체 간행물 기고 등을 통한 홍보
- 업종별 구매담당 임원 정책간담회를 통한 홍보 등

## ▣ 공정위 인사 동향

### 3. 2.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전미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육야휴직을 명함(기간 : 2009.3.2.~2010.3.1.).

### 3. 3.

- 부위원장실 5급상당 김광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 행정주사 홍성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 2009.3.3.~2010.2.28.).

### 3. 5.

-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정중원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기획조  
정관에 포함.(대통령)

### 3. 6.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강재영  
미국, 워싱턴주 검찰청 파견기간 연장을 명함  
(파견연장기간 : 2009.3.6.~2009.9.5.).
-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실 시장조사과 행정주사보  
박기연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보 박진홍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행정주사보 장민희  
행정주사에 임함.

### 3. 9.

-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일반직고위공무원 남선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대통령)

### 3. 13.

-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신영선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경쟁정  
책국 시장분석정책관에 포함.(대통령)
-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 서기관 배진철
-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장 서기관 장덕진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서기관 임은규

부이사관에 임함.

-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심주은
-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이태희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한철기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행정사무관 성경제
-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행정사무관 장장이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사무관 전현식  
서기관에 임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정원선  
행정사무관에 임함.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근  
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전재용  
행정사무관에 임함.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실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종영  
행정사무관에 임함. 경쟁정책국 경제분석과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김청용  
행정사무관에 임함. 카르텔정책국 서비스카르텔과 근무  
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현정주  
행정사무관에 임함.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김시문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  
과 근무를 명함.
-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주사 김명옥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전산사무관에 임함. 기획조  
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 :  
2009.3.13.~별도 발령 시까지).
- 공정거래위원회 토목주사 염철호  
토목사무관에 임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과 근무를  
명함.
-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준영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임영준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권순국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송상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유연무역개발 기구 파견근무 연장을 명함  
(파견연장기간 : 2009.3.13.~2010.3.12.).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행정주사보 안유진
-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행정주사보 박세로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과 행정주사보 현종환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보과 행정주사보 김지연
- 시장감시국 제조업경쟁과 행정주사보 정은수
- 기업협력국 기맹유통과 행정주사보 이병남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보 장상민  
행정주사에 임함.
- 카르텔정책국 서비스카르텔과 행정주사 변동영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 : 2009.3.13.~별도 발  
령 시까지).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노용환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 : 2009.3.13.~별도 발  
령 시까지).
-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 행정주사보 김경배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근무를 명함.
-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임정진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9.3.13.~별도 발령 시까지).
-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김영식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9.3.13.~별도 발령 시까지).
-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이호섭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카르텔정책국 제조카르텔과 근  
무를 명함.
-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강나리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카르텔정책국 서비스카르텔과  
근무를 명함.
-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박준영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 근무  
를 명함.
-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정하규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 ○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민지현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  
도급과 근무를 명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  
급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 : 2009.3.13.~별도 발령 시  
까지).

### ○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유승완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최호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  
과 근무를 명함.

### ○ 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 기능9급(운전원) 서인수

기능8급(운전원, 근속승진)에 임함.

## 3. 11.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신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유학휴직)에 의하여 휴  
직을 명함(휴직기간 : 2009.4.7.~2011.4.6.).

## 3. 23.

### ○ 공정거래위원회 어경희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감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3. 27.

### ○ 양명조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함  
(기간 : 2009.3.27.~2012.3.26.).

## 3. 30.

### ○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행정주사 이현경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제4호에 의거 (육아)휴직을 명함  
(기간 : 2009.3.30.~2010.3.29.).

### ○ 행정안전부 행정주사 이주욱

공정거래위원회 전임을 명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9.3.30.~별도 발령 시까지).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시보) 김용진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근무를 명함.

3. 31.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김현주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장주연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근무를 명함.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  
관실 시장조사과 근무를 명함.
-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근무를 명함.

4. 3.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유진  
복직을 명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지원근무  
를 명함(기간 : 2009.4.3~별도 발령 시까지).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박진홍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9.4.3~별도 발령 시까지).

4. 6.

- 김은미  
계약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심판관리관에 포함  
(기간 : 2009.4.6~2011.4.5.).

4. 7.

- 시장감사국 서비스업경쟁과 행정사무관 이강수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실 시장분석과 근무를 명함.
- 기업협력국 종합상담과 행정사무관 김신영  
시장감사국 서비스업경쟁과 근무를 명함.
-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실 시장분석과 행정사무관  
박주환  
기업협력국 종합상담과 근무를 명함.

4. 10.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이동원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실 시장분석과 근무를 명함.

4. 13.

- 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 행정사무관 편유림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근무를 명함.

4. 17.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유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박진홍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행정주사보  
박현욱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4. 20.

-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실 기업집단과 행정주사보  
박수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4. 24.

-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행정주사보(시보) 노현재  
행정주사보에 임함.

4. 29.

- 상임위원실 기능9급(사무원) 윤은숙
- 기업협력국 종합상담과 기능9급(사무원) 유현정  
기능8급(사무원, 근속승진)에 임함.

5. 6.

- 카르텔정책국 제조카르텔과장 서기관 황정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4호(특별승진)에 따라 부이  
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명예퇴직)  
에 따라 그 직을 면함.
- 공정거래위원회 최선아  
복직을 명함. 사무처 기업협력국 종합상담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 : 2009.5.6~별도 발령 시까지).

5. 7.

- 전성훈
- 최종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함  
(2009.5.7~2012.5.6).(대통령)